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구 보

http://www.seo.incheon.kr/

선람	기관의장

제955호 2013. 4.22(월)

차 례

공 고

○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-474호 인천도시관리계획(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 열람 공고 ---------- 1

○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-478호 입법예고문 ---------- 2

○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-48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 ---------- 4

○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-4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 ----- 9

○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-491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(폐차)처리 공고 ----- 15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 **편집 : 기획홍보실 [032-560-4140]**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- 474호

인천도시관리계획(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 열람 공고

인천도시관리계획(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. 4. 19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(변경 없음)
2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 없음)
3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연번	기 정				변 경			비 고
	가구번호	획 지		분할가능획지수	가구번호	획 지		
		위치	면적(㎡)			위치	면적(㎡)	
1	92	1	1,319.7	3	92	1	1,698.2	합병
		2	378.5	2				

4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조서 (변경 없음)
5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   : 획지의 합병에 따른 공동주차 출입구 변경
6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   ○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   ○ 의견제출 :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○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: 열람 장소에 비치
7. 열람장소
   ○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(☎560-4763)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- 478호

입 법 예 고 문

『인천광역시서구세 조례』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**「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(입법예고 대상)**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4월 18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자치법규명 :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

2. 개정이유

○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서구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지방세법 제112조의 용어 명칭변경으로 구세조례 제12조 및 제13조의 “과세특례”를 “도시지역분”으로 개정

※ 도시계획세 명칭변경 연혁

☞ ‘10년까지 : 도시계획세 → ‘11년 : 과세특례 → ‘13년 : 도시지역분

→ 지방세법 제112조의 용어 및 명칭 변경으로 조의 제목 변경
(안 제12조, 제13조)

○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구세조례 제14조의 “5만원”을 “10만원”으로 개정

-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재산세(주택분)를 한꺼번에 부과·징수할 수 있는 금액 상향 조정(안 제14조)

4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3년 5월 8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**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 : 세무과장)**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의견제출처

- 주 소 : (우404-701)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 244)
 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과
- 전화번호 : 032)560-4201 (FAX 560-2722)

5. 공청회 개최계획 : 없음

6. 붙임 : 『인천광역시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1부. 끝.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- 481호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3년 4월 22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○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이 일부개정('12. 9.22)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여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그 운영방식을 Pool제로 전환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

○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사항 항목을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사항에 맞게 일부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7명이상 9명이하에서 16명이상 20명이하로 구성

○ 구성위원의 1/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확대하고 위원 중 의회추천 2명, 여성위원 4명 포함

○ 내부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, 보건소장, 5급이상공무원 1명 추가 포함

○ 서면심의에 대한 사전전보, 계약직공무원채용기간 연장 항목 신설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3년 5월 24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 : 총무과장, 전화 : 032-560-4102, FAX : 032-560-27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○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,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4조(구성)제1항 본문 중 “7명 이상 9명 이하”를 “16명 이상 20명 이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위원은 총무국장, 주민생활지원국장, 도시관리국장, 보건소장, 5급 이상 공무원 2명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. 다만, 위원 중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2명과 여성위원 4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전보제한자의 전보심의

5.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연장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구성)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위원은 총무국장, 도시관리국장, 5급 이상 공무원 1명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. 다만, 위원 중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과 여성위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	제4조(구성)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위원은 총무국장, 주민생활지원국장, 도시관리국장, 보건소장, 5급 이상 공무원 2명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. 다만, 위원 중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2명과 여성위원 4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
제7조(인사위원회 회의록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~ 3. (생략) 4.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계획과 결과 5.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(이하생략)	제7조(인사위원회 회의록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전보제한자의 전보심의 5.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연장 (이하생략)

실·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기타 문제점		

실 · 과별 의견			
협의개요	실 · 과별	제출의견	검토내용
○ 기 간 .○ 내 용 -	-	-	-

입 법 예 고			
협의개요	제 출 자	제출의견	검토내용
○ 기 간 ○ 내 용	-	-	-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- 482호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3년 4월 22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○ 「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(표준안)」이 일부개정에 따라 인천시 징계기준과의 형평성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징계기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『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』 [별표4]※하단

- 직무로 한정하였던 공금횡령 ·유용을 포괄적 공금횡령·유용으로 확대
- 업무상 배임 추가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3년 5월 14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 : 총무과장, 전화 : 032-560-4102, FAX : 032-560-27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○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,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“포상”을 “포장”으로 한다.

별표 4의 비고 중 “직무와 관련한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은”을 “공금횡령·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징계의 감경) ① (생 략) 1. 「상훈법」에 따른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 2. ~ 4. (생 략) [별표4]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 기준 ※ 금품 등 수수액이 소액이라도 2회 이상 및 정기·상습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, 직무와 관련한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은 이 규정 제3호를 준용한다.	제4조(징계의 감경) ① (현행과 같음) 1. 「상훈법」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. ~ 4. (현행과 같음) [별표4]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 기준 ※ 금품 등 수수액이 소액이라도 2회 이상 및 정기·상습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, **공금횡령·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는** 이 규정 제3호를 준용한다.

《개정후》

〔별표4〕 **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(제2조제1항 관련)**

징 계 사 유		징 계 기 준					
		파면	해임 이상	강등 이상	정직 이상	감봉 이상	견책 이상
1.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	1) 50만원 미만(수동)					○	
	2) 50만원 미만(능동)				○		
	3)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(수동)				○		
	4)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(능동)			○			
	5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(수동·능동)		○				
	6) 300만원 이상(수동·능동)	○					
2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,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	1) 50만원 미만(수동)				○		
	2) 50만원 미만(능동)			○			
	3)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(수동·능동)		○				
	4) 100만원 이상(수동·능동)	○					
3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,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	1) 50만원 미만(수동)		○				
	2) 50만원 미만(능동)	○					
	3) 50만원 이상(수동)	○					

※ 금품 등 수수액이 소액이라도 2회 이상 및 정기·상습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, 직무와 관련한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은 이 규정 제3호를 준용한다.

실·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기타 문제점		

실 · 과별 의견			
협의개요	실 · 과별	제출의견	검토내용
○ 기 간 .○ 내 용 -	-	-	-

입 법 예 고			
협의개요	제 출 자	제출의견	검토내용
○ 기 간 ○ 내 용	-	-	-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- 491호

무단방치자동차 강제(폐차)처리 공고

1.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제6조에 의거 무단방치자동차강제(폐차)처리 공고 하오니 해당 차량소유자는 본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(이전 또는 자진폐차)하여 주시고 (차량 내 모든 물품. 비품도 강제처리 됨)또한 이해관계인은 권리행사 기간내에 권리행사 및 대체 압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만일,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는 차량은 강제(폐차)처리됨은 물론 차량소유자 또는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제86조,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,제22조(20-150만원 범칙금)에 의거 통고처분 할것이며, 또한 동법제 81조제1호(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)에 의거 관할검찰청에 송치하게됩니다.
3. 또한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 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지않을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가. 공고기간 : 2013년 04월 23일 ~ 2013년 05월 08일
나. 대상차량 : 따로붙임(94어6512 외16건)
다. 강제(폐차)처리시기 : 2013년 05월 08일 이후
라. 강제(폐차)처리장소 : 대신폐차산업(주),동일차량산업(주),경인오토리사이클링, 대신철강(주)폐차사업소
마.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기간 : 공고일로 부터 만료일까지.
바. 문 의 처 : 인천서구청 교통행정과 (☎ 032-560-4962)

붙 임 : 무단방치자동차강제(폐차)처리내역 1부. 끝.

2013년 04월 22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무단방치자동차 강체(폐차)공고처리 내역

명령번호	차량 번호	차종	소유주	소유주 주소	압류 및 저당권자 (이해관계인)
49	94어6512	갤로퍼밴	이 정 이	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794번길 36 (자일동)	의정부시장[교통,차량,환경,세무,] 양주시청[환경,검사] 강북구청장[주정차] 양주경찰서장[경비교통] 의정부경찰서장[정비] 순천경찰서장[교통] 서울종로구청장[교통행정,교통지도] 서울성북구청장[교통지도] 서울광진구청장[주차] 서울용산구청장[교통] 서울중랑구청장[교통] 학국도로공사경지지역본부[도로] 서울동대문구청장[교통] 서울동봉구청장[교통] 서울노원구청장[교통]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[주차] 인천서구청장[교통] 서울동작구청장[교통] 서울노원구청장[교통]
55	경기46무5699	카니발	이 은 숙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422,210동1201호(중산동,중산마을)	**현대캐피탈㈜**[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5-21] 일산경찰서장[경비교통] 고양시장[환경] 서울시청[교통지도]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장[차량] 고양시일산동구청장[세무] 청주흥덕구청장[세무] 고양시청[환경] 일산경찰서장[경비교통] 고양시일산서구청장[교통] 청주시청[환경] 평택시송탄출장소장[지역] 하남시청[교통] 경기오산시장[교통] 서울강남구청장[주차] 청주흥덕경찰서장[교통] 경기팔달구청장[주차]
56	번호미상 오토바이	오토바이	미상	미상	미상
57	28러3001	아반떼	CHNOKHUN DECHANON	인천 서구 백석산로 29,2호(오류동)	인천서구청장[교통행정]
60	번호미상 오토바이	오토바이 100cc	미상	미상	미상
61	번호미상 오토바이	오토바이 100cc	미상	미상	미상
62	번호미상 오토바이	오토바이 100cc	미상	미상	미상
63	경기77가8821	트라제	오 화 석	경기도 광명시 연서일로9번길5-5(철산동)	**삼성캐피탈㈜**[서울중구태평로2가150] 광명시청[교행,환경,시민,지민,세정] 서울구로구청장[교행] 부천시청교통지도사업소[주차] 경기광명경찰서장[교통] 인천부평구청장[교행] **국민건강보험공단광명지사장[자징]** 서울금천구청장[교통지도] 광명시시민차량관리팀[시민] 군포시청[교툥지도] 서울서초구청장[주차관리] 서울서구청장[주차] 서울동작구장[교지] 서울강남구청장[교통지도] 서울관악구청장[교통지도] 대전서구청장[교통관리] 서울성북구청장[교통지도] 서울영등포구청장[주차문화] 서울구로구청장[주차] 경기시흥시장[주차] 경기부천시장[교통행정] 광명시차량등록사업소장[차량]
64	인천32더2808	무쏘	㈜대현공영 ㈜ 신아공영 감사:이미숙	인천 남구 인주대로467(주안동) **인천 남구 주안동 634-5번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105,502동108호(논현동,논현휴먼시아)**	**㈜현대상호저축은행**[서울강남구청담동78-6] 인천동부경찰서장[경비교통] 인천동부경찰서장[경비교통] 서울강남구청장[교지] 인천남구청장[환경,세무,환녹] 전남목포시청[교행] 인천남동경찰서장[교통] 경남진주시청[교통행정] 인천서구청장[교통행정,] 인천중구청장[교통행정] **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장**[징수] 인천남부경찰서장[경비교툥]

무단방치자동차 강제(폐차)공고처리 내역

명령번호	차량 번호	차종	소유주	소유주 주소	압류 및 저당권자 (이해관계인)
70	73부1099	스타렉스	김 세 인	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종로68번가길11-3(원미동)	**현대캐피탈㈜**[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5-21] 부천중부경찰서장[경비교통] 경기부천시청[차량관리] 원미구청장[교통,환경] 고양시덕양구청장[도시이관] 서울중구청장[교통지도] 서울영등포구청장[주차문화] 서울마포구청장[교통지도] 부천원미경찰서장[경비교통,주차]
71	인천7로 4735	포터	배 강 구	인천 남구 독배로432번길16,202호(숭의동)	인천남구청장[지교,교통,세무] **인천지방법원** 사건99카단3069[왕선인:인천중구항동7가27번지107호 비취맨션11동1007호] 서울서초구청장[교지] 인천광역시장[주차] 서울서대문구청장[교지] 인천중구청장[교녹,교통] 인천차량등록사업소[차량] 서울강남구청장[교지] 부천원미구청장[교통]
73	69수2277	카니발	이 용 주	인천 서구 석남동61,가동302호(석남동,초원연립)	**하나캐피탈㈜**[서울서초구1328-3나라빌딩7층] 인천서부경찰서장[경비교통] 인천서구청장[세무] 서울용산구청장[교통지도,환경,교통민원,교통행정] 경기용인시수지구청장[주차] 부천시원미구청장[도시관리]
74	인천73고 5142	그레이스	김 중 기	인천 연수구 경원대로119번길21,5/7풍림2차아파트104동902호(동춘동) **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전원길18-9**	인천남동구청장[환경,세무] **국민연금관리공단인천지사**[가일] 인천남부경찰서장[교통] **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부평지사**[직관] 인천차량등록사업소장[차량] 인천연수구청장[환위,환경] **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동지사**[징수] **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**[징수] 인천연수구청장[환경,새무,교통] 인천연수경찰서장[경비교통] 인천부평구청장[주차] **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부지사**[징수] 시흥시청클리도시과[도시] 경기화성시청[징수]
76	번호미상 오토바이	100CC	미상	미상	미상
77	인천35노 1446	카니발	신 민 국	인천 서구 승학로197번길22,203호(심곡동,서광원룸)	**현대캐피탈㈜**[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5-21] 인천서구청장[환경,교통] 서울은평구청장[교통지도] 인천서부경찰서장[경비교통] 경기광명차량등록사업소장[차량]
82	번호미상 45보4244	그랜저	㈜ 카월드 모터스 **공 영 석**	경기도 김포시 감암로69,4필지(상품용/걸포동) **서울 도봉구 우이천로38마길7-5(쌍문동)**	청주시흥덕구청장[주차] 김포경찰서장[경비교통] 인천남동구청장[교통] 인천남구청장[교통] 경기김포시정[세무] 서울강남구청장[교통지도] 서울구로구청장[주차]
84	서울51노 1884	마티즈	㈜ 썬텔레콤 **박 명 준**	서울 관악구 문성로100(신림동) **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19,807동 203호(정자동,정든마을)**	서울관악경찰서장[교통] 서울남부경찰서장[교통] 수원시팔구청장[사산] 경기하남시청[도로] 서울강동구청장[교통] 서울관악구청장[교행,세무,교통] 서울서초구청장[주차관리] **국민건강보험공단관악지사장**[자격징수] 서울강남구청장[교통지도,세무] 서울강북구청장[교통지도] 서울금천경찰성장[경비교통] 인천부평구청장[교통] 부천시원미구청장[교통] 인천부평구청장[교통] 서울마포구청장[교통] 서울영등포구청장[주차문화] 부천시청[도시] 인천서구청장[교통]